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결	

제1333호 2018. 5. 8.(화)

조 례

-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6
-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73
-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9

공 고

-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92
-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99
-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6

기 타

- 시정 알림판 ----- 120

회람							
----	--	--	--	--	--	--	--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4. 19.) 의결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5. 8.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정 순 주

목포시 조례 제3173호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을 신설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제2조제1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자.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안의숙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을 심사할 때 제안의 실행가능성, 정책활용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등 숙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수정·보완된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출한 같은 제안으로 본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의 민원으로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출된 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안의 숙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출된 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안의 불채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의견조회한 제안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복시상 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장 총 칙</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가. ~ 사.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2조(용어의 정의) ----- -----. 1.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자.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7조(제안의 접수) ①·②·③ (생 략) <u><신 설></u>	제7조(제안의 접수)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생 략) <u><신 설></u>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제안의 숙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을 심사할 때 제안의 실행가능성, 정책활용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등 숙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수정·보완된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출한 같은 제안으로 본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②·③ (생 략) <u><신 설></u>	제13조(의견조회 등) ①·②·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26조(부상금의 지급) ①·② (생략) <u><신설></u>	제22조(부상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4. 19.) 의결된 목포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5. 8.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정 순 주

목포시 조례 제3174호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한다.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초과한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령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화·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현장

제29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현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 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 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3조(업무의 범위) 시장은 영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4. 19.) 의결된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5. 8.

목포시장 권한대행 정 순 주
부 시 장

목포시 조례 제3175호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 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 산세 산출세액이 <u>1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기) ----- ----- ----- <u>20만원</u> ----- ----- ----- -----.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4. 19.) 의결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5. 8.

목포시장 권한대행 정 순 주
부 시 장

목포시 조례 제3176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한다.

조례 제3103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8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 ----- 2018년 12월 31일 ----- ----- ----- 2018년 12월 31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 ----- ----- ----- 2018년 12월 31일 ----- ----- ----- ----- -----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
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1. ~ 3. (생 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
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
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하
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하
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
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
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
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
한 감면) -----

----- 2018년 12월 31일 --

-----.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

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
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 략)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3103호(2017.6.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
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자동이체 -----

② (현행과 같음)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3103호(2017.6.5.)
부칙

제1조(시행일) -----

----- 2019년 1월
1일 -----.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4. 19.) 의결된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5. 8.

목포시장 권한대행 정 순 주
부 시 장

목포시 조례 제3177호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중 “3억원 이하”를 삭제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원 공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3억원이하 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10. (생 략)	제13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 ----- ----- 3천만원 이상 ----- ----- -----. 1. ~ 9. (현행과 같음) 10. 공원 공사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4. 19.) 의결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5. 8.

목포시장 권한대행 정 순 주
부 시 장

목포시 조례 제3178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181명” 을 “1,203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59명” 을 “1,181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203	1,203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182	1,182				
3급	1	1				
4급	9	4	1	1	3	
5급	68	24	3	3	15	23
6급이하	1,104	1,104				
연구직계	17	17				
연구관						
연구사	17	17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 <u>1,181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공무원의 총수) ----- ----- <u>1,203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159명</u>							1. ----- <u>1,181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u>1,181</u>	<u>1,181</u>					총 계	<u>1,203</u>	<u>1,203</u>				
정무직 계	<u>1</u>						정무직 계	<u>1</u>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159</u>	<u>1,159</u>					일반직 계	<u>1,182</u>	<u>1,182</u>				
3급	1	1					3급	1	1				
4급	9	4	1	1	3		4급	9	4	1	1	3	
5급	68	24	3	3	15	23	5급	68	24	3	3	15	23
6급 이하	<u>1,081</u>	<u>1,081</u>					6급 이하	<u>1,104</u>	<u>1,104</u>				
연구직 계	<u>18</u>	<u>18</u>					연구직 계	<u>17</u>	<u>17</u>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u>18</u>	<u>18</u>					연구사	<u>17</u>	<u>17</u>				
지도직 계	<u>3</u>	<u>3</u>					지도직 계	<u>3</u>	<u>3</u>				
지도관							지도관						
지도사	3	3					지도사	3	3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4. 19.) 의결된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5. 8.

목포시장 권한대행 정 순 주
부 시 장

목포시 조례 제3179호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6조까지의 모든 조 번호와 조 제목을 붙여 쓴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5조, 부칙의 모든 항 (①~④) 다음에 각각 한 칸을 띄어 쓴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을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한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미 존재하는 공인의 인영을

동판에 새겨 사용하거나 마모 또는 인영의 모형이 변형되기 쉬운 재질을 사용한 인영을 인증기에 부착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를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공인인영의 색깔)”을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각인)”을 “(새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서명”을 “행정기관명”으로, “직인”을 “공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인하여야”를 “새겨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등록·재등록”을 “등록·재등록은”으로, “이를 행하여 등록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상황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를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인영부에 의하여”를 “인영부로”로 한다.

제9조 중 “폐기하였을”을 “폐기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인의”를 “공인의 분실, 마멸에 따른”으로, “폐지등으로”를 “폐지 등으로”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 자치행정과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보존하고 그 공인을 이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공인”을 각각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을 “정보통신과는”으로, “컴퓨터에 파일로 등록된 전자공인을 관리한다.”를 “전자 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장은”을 “동장이”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인 사고보고 등)”을 “(공인 사고보고)”로 하고,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를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의 보관자는 그 직에 임명된 자이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용기”를 “보관함”으로, “집무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를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을 이중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인의 날인”을 “공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정방형
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cm정방형
2.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6cm정방형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u>재무관</u> ,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u>부채관리관</u> , <u>통합</u> <u>지출관</u> , 지출원 및 분임자	2.0cm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cm정방형
4. <삭 제>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제7조 관련)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글씨체 및 규격	
		재 료	
		등 록 (재등록)사유	
		시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기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사유	☐ 미멸 ☐ 분실 ☐ 기타()
		폐기방법	☐ 이 관 ☐ 기 타()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시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작성 방법 >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제8조 관련)

20 . 2. 1. 현재

공인명	공인의 인영	공인명	공인의 인영	공인명	공인의 인영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별지 제4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년 월 일

자치행정과장 앞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u>일시 및 장소</u>	
3. 사고내용	
4. 사고 후의 <u>처리경위</u>	
5. 기 타	

증기에 부착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③ 시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자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생 략)

제4조의2 (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신 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재무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

③ -----

--전자이미지공인-----,
전자이미지공인-----
-----.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②<신 설>

제5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기고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공인의 등록·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등록한다.

②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신 설>

제7조 (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4조의2와 같음)

제5조(새김) ① -----행정기관명

-.-----공

인-----

-.-----

② -----

-----새겨야---.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

---등록·재등록은-----

한다.

② -----

-----업무관

리시스템의 공문작성 서식을 활

용하여 전자문서로 -----

-----.

-----.

③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

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공인대장) -----공

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
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
요한 상황을 정리케 하여야 한
다.

제8조 (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
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
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
정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등재하여 영구 보존하고
그 공인을 이관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

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

-----인영부로-----
-----.

제9조(공고) -----
-----폐기할-----
-----.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분실·마멸에 따른-----폐지 등으
로-----업무관리시
스템의 공문작성 서식을 활용하
여 전자문서로 -----
----- 지체 없이
자치행정과장에게-----
-.

②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
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

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 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화일로 등록된 전자공인을 관리한다.

③ 시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동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2조 (공인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

--.

② 정보통신과는 전자이미지공인-----
-----,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
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
동장이 전자이미지공인-----

-----.

제12조(공인 사고보고) -----

-----따른-----

-----.

제13조(공인 보관자) -----
-----.
-----회계관계공무원 공인

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제14조 (보관방법) ①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5조 (공인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의 보관자는 그 직에 임명된 자이다.

제14조(보관방법) ① -----
----보관함-----,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을 이중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인 날인) ① 공인-----

-----.

②.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공 인 의 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규 격</th></tr> </thead> <tbody> <tr> <td>1.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td><td></td></tr> <tr> <td>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td><td>2.1cm정방형</td></tr> <tr> <td>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td><td>1.8cm정방형</td></tr> <tr> <td>2.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td><td>1.6cm정방형</td></tr> <tr> <td>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td><td></td></tr> <tr> <td>가. 징수관, <u>경리관</u>,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td><td>2.0cm정방형</td></tr> <tr> <td>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td><td></td></tr> <tr> <td>나. 출납원 및 분임자</td><td>1.8cm정방형</td></tr> <tr> <td>4. <u>계 인</u></td><td></td></tr> <tr> <td>가. <u>시장계인</u></td><td>길이 3cm</td></tr> <tr> <td>나. <u>시장 보조기관의 계인</u></td><td>폭 1.3cm</td></tr> <tr> <td>다. <u>사업소, 동 계인</u></td><td>반타원형</td></tr> </tbody> </table>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정방형	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cm정방형	2.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6cm정방형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u>경리관</u> ,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2.0cm정방형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cm정방형	4. <u>계 인</u>		가. <u>시장계인</u>	길이 3cm	나. <u>시장 보조기관의 계인</u>	폭 1.3cm	다. <u>사업소, 동 계인</u>	반타원형	[별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공 인 의 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규 격</th></tr> </thead> <tbody> <tr> <td>1.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td><td></td></tr> <tr> <td>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td><td>2.1cm정방형</td></tr> <tr> <td>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td><td>1.8cm정방형</td></tr> <tr> <td>2.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td><td>1.6cm정방형</td></tr> <tr> <td>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td><td></td></tr> <tr> <td>가. 징수관, <u>재무관</u>,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td><td>2.0cm정방형</td></tr> <tr> <td><u>부채관리관</u>, <u>통합지출관</u>, 지출원 및 분임자</td><td></td></tr> <tr> <td>나. 출납원 및 분임자</td><td>1.8cm정방형</td></tr> <tr> <td>4. <삭 제></td><td><삭 제></td></tr> </tbody> </table>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정방형	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cm정방형	2.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6cm정방형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u>재무관</u> ,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2.0cm정방형	<u>부채관리관</u> , <u>통합지출관</u> ,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cm정방형	4. <삭 제>	<삭 제>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정방형																																														
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cm정방형																																														
2.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6cm정방형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u>경리관</u> ,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2.0cm정방형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cm정방형																																														
4. <u>계 인</u>																																															
가. <u>시장계인</u>	길이 3cm																																														
나. <u>시장 보조기관의 계인</u>	폭 1.3cm																																														
다. <u>사업소, 동 계인</u>	반타원형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정방형																																														
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cm정방형																																														
2.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6cm정방형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u>재무관</u> ,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2.0cm정방형																																														
<u>부채관리관</u> , <u>통합지출관</u> ,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cm정방형																																														
4. <삭 제>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 등록(재등록 · 폐기)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자치행정과장 앞

년 월 일

신청인 (인)

1. 이유 (등록·재등록·폐기)	
2. 서체규격	
3. 공인명	
4. 사용(폐기)예정일	년 월 일
5. 비치 및 관수자	
6. 공인의 모형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제7조 관련)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 (재등록)사유	
		시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기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사유	☐ 미멸 ☐ 분실 ☐ 기타()
		폐기방법	☐ 이관 ☐ 기타()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시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작성 방법 >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제7조 관련)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글씨체 및 규격	
		재 료	
		등 록 (재등록)사유	
		시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기	(인 영)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사유	☐ 미멸 ☐ 분실 ☐ 기타()		
폐기방법	☐ 이관 ☐ 기타()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시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작성 방법 >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제8조 관련)

날 인 년월일	년	년	년	년	년
공인명	2월 1일현재	2월 1일현재	2월 1일현재	2월 1일현재	2월 1일현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제8조 관련)

20 . 2. 1. 현재

공인명	공인의 인명	공인명	공인의 인명	공인명	공인의 인명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등록 재등록

[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년 월 일

자치행정과장앞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년 월 일

자치행정과장앞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처리경위	
5. 기 타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4. 19.) 의결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5. 8.

목포시장 권한대행 정 순 주
부 시 장

목포시 조례 제3180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급일 현재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을 “목포시에 주소를 둔”으로 한다.

제6조 중 “최초에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을 “최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계좌 ☐ 동의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상기와 같이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1. <삭제> 2. <삭제>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 목포시에 -----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다만, 최초에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 최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15일 -----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table><tr><td colspan="5">참전등록번호</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18">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td><td colspan="2">처리기간</td></tr><tr><td colspan="18"></td><td colspan="2">30일</td></tr><tr><td rowspan="2">신청인 ☐ 동의</td><td>성명</td><td colspan="4"></td><td>생년월일</td><td colspan="12"></td></tr><tr><td>주소</td><td colspan="17">우편번호 : □□□ - □□□ (전화번호:)</td></tr><tr><td rowspan="2">예금계좌 ☐ 동의</td><td>금융기관명</td><td colspan="4"></td><td>예금종류</td><td colspan="12"></td></tr><tr><td>계좌번호</td><td colspan="4"></td><td>예금주성명</td><td colspan="12"></td></tr><tr><td>개인정보취급</td><td colspan="18">☐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td></tr><tr><td colspan="20">상기와 같이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td></tr><tr><td colspan="20">년 월 일</td></tr><tr><td colspan="20">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tr><td colspan="20">목 포 시 장 귀하</td></tr><tr><td colspan="18">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td><td colspan="2">수수료</td></tr><tr><td colspan="18"></td><td colspan="2">없음</td></tr></table>	참전등록번호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계좌 ☐ 동의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개인정보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상기와 같이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table><tr><td colspan="5">참전등록번호</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18">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td><td colspan="2">처리기간</td></tr><tr><td colspan="18"></td><td colspan="2">15일</td></tr><tr><td rowspan="2">신청인 ☐ 동의</td><td>성명</td><td colspan="4"></td><td>생년월일</td><td colspan="12"></td></tr><tr><td>주소</td><td colspan="17">우편번호 : □□□ - □□□ (전화번호:)</td></tr><tr><td rowspan="2">예금계좌 ☐ 동의</td><td>금융기관명</td><td colspan="4"></td><td>예금종류</td><td colspan="12"></td></tr><tr><td>계좌번호</td><td colspan="4"></td><td>예금주성명</td><td colspan="12"></td></tr><tr><td>개인정보취급</td><td colspan="18">☐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td></tr><tr><td colspan="20">상기와 같이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td></tr><tr><td colspan="20">년 월 일</td></tr><tr><td colspan="20">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tr><td colspan="20">목 포 시 장 귀하</td></tr><tr><td colspan="18">1. <삭제> 2. <삭제></td><td colspan="2">수수료</td></tr><tr><td colspan="18"></td><td colspan="2">없음</td></tr></table>	참전등록번호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계좌 ☐ 동의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개인정보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상기와 같이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1. <삭제> 2. <삭제>																		수수료																				없음	
참전등록번호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계좌 ☐ 동의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개인정보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상기와 같이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참전등록번호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계좌 ☐ 동의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개인정보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상기와 같이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1. <삭제> 2. <삭제>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5조제4항 관련)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개 인 정 보 취 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5조제4항 관련)							처리기간 15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개 인 정 보 취 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 신청서 개인정보를 관련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1. <삭제> 2. <삭제>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4. 19.) 의결된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5. 8.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정 순 주

목포시 조례 제3181호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급기준일 현재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을 “목포시에 주소를 둔”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을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으로 하며,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을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1. <삭제> 2. <삭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보 훈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보훈대상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1. <삭제> 2. <삭제> 3. <삭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보훈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훈대상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보훈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훈대상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1. <삭제> 2. <삭제> 3. <삭제>			수수료
			없 음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4. 19.) 의결된 목포시 공간 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5. 8.

목포시장 권한대행 정 순 주 부 시 장

목포시 조례 제3182호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를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을”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민원봉사실”을 “부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관리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1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

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복지국장이 된다”를 “총괄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의 구성등) 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단체간의 협조사항 처리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기반 시설물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회 참여기관의 실무자로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간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참여 기관 간 상호 협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 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시스템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 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 라. 공통 공간정보자료 제공 및 유지관리
- 마.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바. 기타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관리부서 (시설물 관리부서)

-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 · 수정 · 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실시설계 수행
-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파일로 제출
-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요인 발생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3과 같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산자료의 갱신) 도로굴착 등의 현장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500분의 1 도면 사용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를 기록
 - 가. 작성자 : 관리부서 업무담당주사
 - 나. 확인자 : 관리부서장

제13조의3(자료제출 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4(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① 총괄부서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 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제공여부를”을 “접수일부터”로, “통보하여야”를 “자료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간정보제공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은 목포시 보안업무관리요강 및 목포시 공간정보보안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간정보 자료제공 등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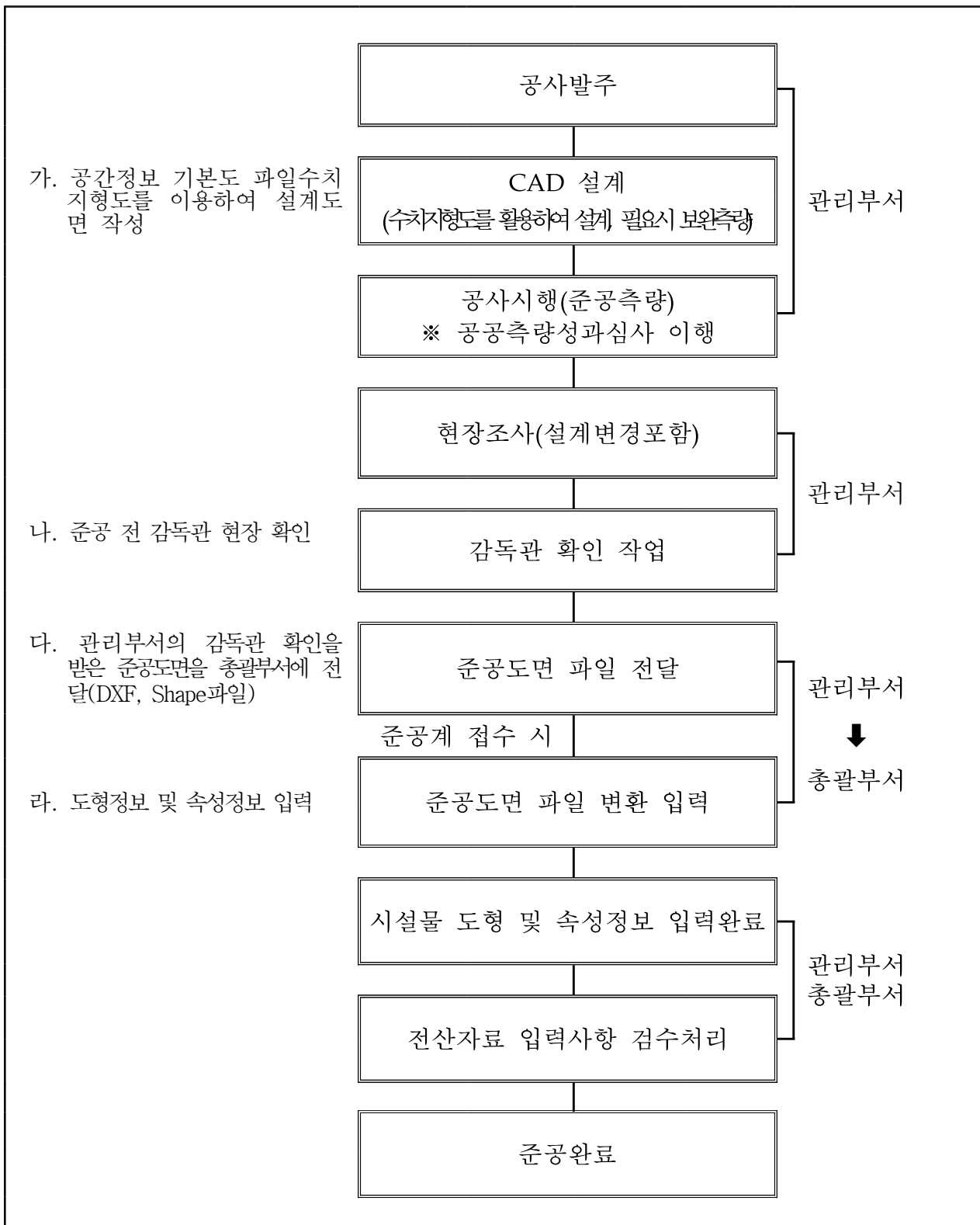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시설공사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갱신 절차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결 재	담 당 자	담 당	과 장
1. 장애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 장애발생 업무명				
3. 장애처리시기				
4. 사 용 자				
5. 장애발생내용				
구 분	내 용			
장애발생 상 황	업 무 명			
	장애내용			
	발생경위			
조치사항				
확인사항				

[별지 제4호서식]

시스템 점검부

[illegible]

[별지 제5호서식]

공간 정보 제공 대장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u>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축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6. “총괄부서”란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u>민원봉사실</u>을 말한다. 7. “관리부서”란 공간정보의 생산·활용·갱신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8. ~ 11. (생략) <u><신설></u>	제1조 (목적) ----- <u>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을</u> ----- ----- -----. 제2조 (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부서를 ----- --. 7. “관리부서”란 <u>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u> 말한다. 8. ~ 11. (현행과 같음) 12. “<u>공간정보체계</u>”란 <u>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u>를 말한다. 13. “<u>지하시설물도</u>”란 <u>지하시설물을</u>
<u><신설></u>	

현행	개정안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③ (생략)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직제의 변경으로 직위 또는 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직위 또는 부서가 당해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u>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u>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총괄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⑦<u>협의회</u>----- ----- -----. ⑧<u>협의회는</u>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의 구성등) ①<u>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단체간의 협조사항 처리등</u>	제8조 (실무협의회의 구성등) <u>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단체간의 협조사항 처리등</u>

현행	개정안
<u>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 기반 시설물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u>②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19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원봉사실장이 된다.</u> <u>③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u>1. 당연직위원은 총괄부서, 관리부서, 정보통신부서의 6급 공무원</u> <u>2.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u> <u>④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10조 (업무지정) <u>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u>	<u>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 기반 시설물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협회 참여기관의 실무자로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u> <u>1. 공간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2. 협회 참여 기관 간 상호 협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u> 제10조 (업무지정) <u>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u> <u>1. 총괄부서</u> <u>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u> <u>나. 시스템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유지관리</u> <u>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u> <u>라. 공통 공간정보자료 제공 및 유지관리</u> <u>마.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u> <u>바. 기타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u> <u>2. 관리부서 (시설물 관리부서)</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1조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 ② (생략) <u><신 설></u>	가. <u>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 · 수정 · 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u> 나. <u>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 실시설계 수행</u> 다. <u>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u> 라. <u>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요인 발생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u> 마. <u>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u> 바. <u>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u> ② <u>각종 시설공사 준공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3과 같다.</u> 제11조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3조의2(전산자료의 갱신) 도로굴착 등의 현장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u>

현 행	개 정 안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500분의 1 도면 사용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중,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를 기록 가. 작성자 : 관리부서 업무담당주 사 나. 확인자 : 관리부서장
<신 설>	제13조의3(자료제출 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4(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①총괄부서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1회 이상의 정기 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

현행	개정안
제14조 (자료의 제공) ① (생략)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u>제공여부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u> <단서 신설> ③·④ (생략) <신설>	<u>하여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다.</u> 제14조 (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접수일부터 ----- 자료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u>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간정보제공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u>
제18조 (공간정보 보안관리 및 보호) (생략) <신설>	제18조 (공간정보 보안관리 및 보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은 목포시 보안업무관리요강 및 목포시공간정보 보안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준용) <u>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19조 (준용) <u>공간정보 자료제공 등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u>

현행	개정안
<u>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 신설 >	【별표3】 시설공사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갱신 절차 <pre> graph TD A[공사발주] --> B["CAD 설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필요시 보완측량)"] B --> C["공사시행(준공측량)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C --> D[현장조사(설계변경포함)] D --> E[감독관 확인 작업] E --> F[준공도면 파일 전달] F --> G[준공계 접수시] G --> H[준공도면 파일 변환 입력] H --> I[시설물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완료] I --> J[전산자료 입력사항 검수처리] J --> K[준공완료] </pre>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수치 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 나. 준공 전 감독관 현장 확인 다. 관리부서의 감독관 확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총괄부서에 전달(DXF, Shape파일) 라.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입력 관리부서 관리부서 관리부서 총괄부서 관리부서 총괄부서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제14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처리기간(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사용용도	☐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타()		
자료제공 신청 내용	자료종류		
	위치		
	도면번호		
	축척	수량	부
제공형태	①테이프②디스켓③도면출력 ④기타()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자료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용료 수수료	

<신설>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접수번호	처리기간(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사용용도	☐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타()		
자료제공 신청 내용	자료종류		
	위치		
	도면번호		
	축척	수량	부
제공형태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제공방식	①테이프②디스켓③도면출력 ④기타()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자료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용료 수수료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1. 장애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 장애발생업무명			
3. 장애처리시기			
4. 사용자			
5. 장애발생내용			
구분	내용		
장애발생 상황	업무명		
	장애내용		
	발생경위		
조치사항			
확인사항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시스템점검부 <table border="1"> <thead> <tr> <th>년월일</th><th>이상유무</th><th>조치사항</th><th>점검자</th><th>비 고 (정기, 수시)</th></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별지 제5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대장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접수 번호</th><th>접수일자</th><th>신청인</th><th colspan="6">공간정보제공내역</th><th rowspan="2">사용료</th><th colspan="3">결재</th></tr> <tr> <th>처리일자</th><th>수령인</th><th>자료명</th><th>종류</th><th>축척</th><th>수량</th><th>제공 형태</th><th>사용용도</th><th>담당자</th><th>담당</th><th>과장</th></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년월일	이상유무	조치사항	점검자	비 고 (정기, 수시)																																																																		접수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공간정보제공내역						사용료	결재			처리일자	수령인	자료명	종류	축척	수량	제공 형태	사용용도	담당자	담당	과장																																																																																																																																																																												
		년월일	이상유무	조치사항	점검자	비 고 (정기, 수시)																																																																																																																																																																																																																																																																					
접수 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공간정보제공내역						사용료	결재																																																																																																																																																																																																																																																																	
	처리일자	수령인	자료명	종류	축척	수량	제공 형태	사용용도		담당자	담당	과장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4. 19.) 의결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5. 8.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정 순 주

목포시 조례 제3183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의 제목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을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 본문 중 “ 관할 시·군·구 내 ” 를 “ 관할 시내 ”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미관지구, 보존지구 ” 를 “ 보호지구 ” 로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이격거리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등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7.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중요문화재 및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2미터 이상의 울타리(웬스 또는 차폐식재)를 설치할 것.
2.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

제29조의 제목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갇셈·보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

같은 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같은 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갇셈·보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면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을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5.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6.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6조의 제목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을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본문) 본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②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블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를 식재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 이용 계획에 따른 경우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1조의2 제2호 중 “2,000㎡ 이상”을 “부지면적 2,000㎡ 이상”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영 제77조 제1항에”를 “영 제80조”로 하며,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를 “영 제76조”로 하며,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한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의 제1호 중 “공관을 제외한다”를 “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의 제5호부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규모점포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준주거지역에 한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준주거지역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준주거지역에 한한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일반공업지역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46조의 제4호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한다.

제51조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16]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 단서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와 건축위원회 및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3. (생 략) 4. <신 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 -----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견해를 또는 용적을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8. (생 략) ② (생 략)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 ----- 지구단위계획구역----- 1.~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① 영 제42조의3 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군·구 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제13조의2(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① ----- ----- 관할 시내 ----- ----- 1. ----- 보호지구, ----- -----
제17조의4 <신 설>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등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7.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중요문화재 및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2미터 이상의 울타리(웁스 또는 차폐식재)를 설치할 것. 2.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
제29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29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특화경관지구 ----- -----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1.~16. (생 략)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u>묘지 관련 시설</u> 18. <신 설>	아니하다. 1.~16. (현행과 같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u>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u>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u>묘지 관련 시설</u>
제30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u>공장</u>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u>창고시설</u>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u>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u>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u>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u>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u>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u>자원 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8. 10.></u>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u>묘지 관련 시설</u> 8. <신 설> 9. <신 설> 10. <신 설> ② <신 설>	제30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u>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u>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u>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u>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u>공장</u>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u>창고시설</u>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u>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u>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u>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u>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u>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u>자원 순환 관련 시설</u>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u>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u>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u>묘지 관련 시설</u>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면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제31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5. (생 략)	제31조 <삭 제>
제32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2조 <삭 제>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3.> 1.~3. (생 략) 4. <신 설> 5. <신 설> 6. <신 설> ② <신 설>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 ----- 다음 ----- 각 호와 같다. ----- ----- ----- ----- 1.~3. (현행과 같음) 4.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5.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6.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등) ① ----- 특화경관지구 ----- -----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 설>

③ <신 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②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를 식재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 이용 계획에 따른 경우

제3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생 략)

1.~12.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제37조 <삭 제>

제38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생 략)

② (생 략)

1.~3. (생 략)

제38조 <삭 제>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생 략)

1.~3. (생 략)

제39조 <삭 제>

제40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생 략)

제40조 <삭 제>

제41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생략) ② (생략)	제41조 <삭제>
제41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2,000㎡ 이상에 한한다) 3.~6. (생략)	제41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부지면적 2,000㎡ 이상에 한한다) 3.~6. (현행과 같음)
제42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5. (생략)	제4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 특정용도 제한지구 ----- ----- 1.~15. (현행과 같음)
제43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16. (생략)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제1항에 따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목포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규모점포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16. (현행과 같음)

<u>제44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생 략)</u> <u>1.~15. (생 략)</u>	<u>제44조 <삭 제></u>
<u>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생 략)</u> <u>1.~3. (생 략)</u>	<u>제45조 <삭 제></u>
<u>제45조의2 <신 설></u>	<u>제45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u>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준주거지역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준주거지역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준주거지역에 한한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일반공업지역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u>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u>	<u>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u>

제한) (생 략) 1.~3. (생 략) 4. <u>보존지구</u> 5.~6. (생 략)	제한)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보호지구</u> 5.~6. (현행과 같음)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생 략) 1.~16.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1.~2.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신 설> 1. <신 설> 2. <신 설>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1.~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개정 2014. 8. 18., 2015. 8. 10., 2017. 7. 1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3호 관련) (생 략) 가.~서. (생 략) 저. (생 략)	[별표 5] (현행과 같음)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3호 관련) (현행과 같음) 가.~서. (현행과 같음) 어. (현행과 같음)
[별표 6] <개정 2014. 8. 18., 2017. 7. 13.>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4호 관련) 가.~거. (생 략)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별표 5 너목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7. 7. 13.> 더.~서. (생 략)	[별표 6] (현행과 같음)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4호 관련) 가.~거. (현행과 같음) 너. ----- ----- <u>더목의</u> ----- ----- 더.~서. (현행과 같음)
[별표 7] <개정 2014. 8. 18., 2015. 8. 10., 2017. 7. 13.>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5호 관련) 가.~거. (생 략)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별표 5 거목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더.~서. (생 략)	[별표 7] (현행과 같음)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5호 관련) 가.~거. (생 략) 너. ----- ----- <u>더목의</u> ----- 더.~서. (생 략)
[별표 16] <개정 2014. 8. 18., 2015. 8. 10., 2017. 7. 13.>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4호 관련) 가.~자. (생 략) <u>차. <신 설></u>	[별표 16] (현행과 같음)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4호 관련) 가.~자. (현행과 같음) <u>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u>

제33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4. 19.) 의결된 목포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 5. 8.

목포시장 권한대행 정 순 주
부 시 장

목포시 조례 제3184호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시장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신 설>

[별표 7]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 제4항 관련)

구 분		보 상 금
종 류	규 격	
현 수 막	면적 5m ² 이상	1,000원 / 장
	면적 5m ² 미만	500원 / 장
벽 보	30cm×40cm 초과	20원 / 장
	30cm×40cm 이하	10원 / 장
전 단		10원 / 장

※ 보상금 지급 한도액 : 50,000원(1인/1주/1회에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광고물등 정비 등 지원)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u>불법 광고물등을 제거</u> <u>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u> <u>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u> <u>있다.</u>	제11조(광고물등 정비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u> <u>에게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u> <u>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u> <u>있다.</u>

<신 설>

[별표 7]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 제4항 관련)

구 분		보 상 금
종 류	규 격	
현 수 막	면적 5m ² 이상	1,000원 / 장
	면적 5m ² 미만	500원 / 장
벽 보	30cm×40cm 초과	20원 / 장
	30cm×40cm 이하	10원 / 장
전 단		10원 / 장

※ 보상금 지급 한도액 : 50,000원(1인/1주/1회에 한함)

목포시 공고 제2018-662호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8.

목 포 시 장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경관법 시행령 : '17. 1. 17. : 공포, '17. 1. 18. : 시행

- 경관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관련 시행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기 위함

- 기획예산과-957(2018. 01. 23.)호와 관련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 개정

2. 주요골자

가. 주요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규모별 경관심의 대상 개정

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u>경관심의 대상</u>)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u>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u>)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8조----- ----- -----.

1. 길이 1,000미터 이상부터 5,000미터 미만의 도로 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서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1.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2. 총 사업비 5억원인 조명공사(경관조명 및 가로등)

3.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

4.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광장·교량·육교 등 토목공사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3. 추진계획

- 관련 실과 협의 : 2018. 2. 1. ~ 3. 2.(30일간)
- 입법예고 의뢰 : 2018. 5. 8.(시보)
- 입법예고 기간 : 2018. 5. 8. ~ 5. 28.(21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6.(예정)
- 시의회의결 : 2018. 7.(예정)
- 규칙 공포 : 2018. 7.(예정)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6. 관계법령

- 「경관법」
- 「경관법 시행령」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8. 예산상황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2018. 5. 8. ~ 2018. 5. 28. (21일간)**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11.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28일까지 목포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287),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061-270-8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중 “경관심의 대상”을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길이 1,000미터 이상부터 5,000미터 미만의 도로 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을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서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총 사업비 5억원인 조명공사(경관조명 및 가로등)”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
4.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광장·교량·육교 등 토목공사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 1,000미터 이상부터 5,000미터 미만의 도로 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서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 26조 및 시행령 제18조----- ----- -----. 1.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2. 총 사업비 5억원인 조명공사(경관조명 및 가로등) 3.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 4.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광장·교량·육교 등 토목공사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타 시·군 비교표

	타 시·군	목포시
군산시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 시설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3. 군산시 경관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심의 대상 및 규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총 사업비 5억원인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2. 총 사업비 5억원인 조명공사(경관조명 및 가로등) 3.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 4.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광장·교량·육교 등 토목공사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전주시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 심의)법 제2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 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2.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조명공사(가로등 및 경관 조명) 3.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 4.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광장·교량·육교 등 토목공사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여수시	제21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도로 2.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하천 시설 3.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신설 교량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 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663호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8.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 '18. 2. 5 공포·시행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2016. 8. 4.)됨에 따라 기존 시행 규칙을 관련 조례에 적합하게 전부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명 개정

- 시행규칙명을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에서 「목포시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 디자인 협의 요청시 별지 제1호 서식과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
- 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구 분	변 경	비 고
①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 처리유형)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업무 처리유형은 협의, 심의·자문으로 구분한다.	
② 제3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 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 및 기관은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 조례 제24조에 따른 디자인 협의 부서의 장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60퍼센트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방법)	· 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으려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지 서식)와 다음 각 호의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시기)	·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라. 부칙 정비(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추진계획

- 관련 실과 협의 : 2018. 2. 1. ~ 3. 2.(30일간)
- 개정안 내부결재 : 2018. 4. 23. ~ 5. 2.
- 입법예고 의뢰 : 2018. 5. 3.(시보)
- 입법예고 기간 : 2018. 5. 8. ~ 5.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6.(예정)
- 규칙 공포 : 2018. 7.(예정)

4. 개정 규칙안 : 별첨

5. 관계법령

-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6. 입법예고 : 2018. 5. 8. ~ 2018. 5. 28. (21일간)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8. 예산상황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변경) 용역비 필요(5년 주기)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10.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28일까지 목포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287),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061-270-8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업무 처리유형)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업무 처리유형은 협의, 심의·자문으로 구분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 및 기관은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디자인계획 도서 또는 도면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조례 제24조에 따른 디자인 협의 부서의 장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60퍼센트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
2. 기본설계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
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또는 심사계획 수립 완료 전
4. 조례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개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선정 이전
5.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설물 제작 이전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방법) ① 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으려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지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재정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 다. 디자인 콘셉트(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기재)
 - 마.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 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의 유형) ①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다.

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
 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보완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
 3. “재심의”는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
- ② 재심의 안건은 위원회에 심의요건을 갖추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의 유형) ① 자문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위 치			
	사 업 규 모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세 부 내 용	○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 업 부 서	부 서 명 (팀 명)			
	담 당		담 당 자	
용 역 수 행 자	주 소		대 표 전 화	
	업 체 명 (대 표 자)		실무담당자 (연 락 처)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8조 및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디자인 담당부서장) 귀하

【붙임 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현황사진, 조감도 등 디자인 협의·조정 에 필요한 자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669호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8.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에 있어
- 환경부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폐기물처리 부담금 산정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소요비용의 산정 (안 제6조)
 - 부지매입단가 및 부지면적 산출방법 구체적 명시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 제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안 제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소각, 음식물)비용 산출방법 구체적 명시
 -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발생예상량 산정기준 제시
-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5.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사항 없음

7. 규제심사 대상검토 : 해당사항 없음**8. 예산수반사항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9. 입법예고 : 2018. 5. 8. ~ 5. 29. [21일간]****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11.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29일까지 목포시장(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3),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 061-270-8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이하 “부지”라 한다)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와 같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 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시 관할 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관리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목포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

가. 시설부지 면적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m ² (12평)/톤	1기 기준 4,000m ² (1,200평)이하
	100~300톤/일	30m ² (9평)/톤	1기 기준 4,000m ² (1,200평)이하
	300~500톤/일	20m ² (6평)/톤	1기 기준 4,000m ² (1,200평)이하
	500톤/일 초과	10~15m ² /톤 (3~4.5평)	1기 기준 4,000m ² (1,200평)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m ² (100평)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m ² (150평)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	500톤/일 이하	330m ² (100평)	-
	500톤/일 초과	500m ² (150평)	-
건 폐 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 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 총 부지면적 = 시설부지 면적(가) + 주민편익시설 면적(나) + 주변녹지대 면적(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6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u> ① <u>납부금액 중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그 택지 등의 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지 면적을 각각 곱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시설의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u> 1. <u>소각시설의 경우 :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시설의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으로 한다.</u> 2. <u>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u> <u>제3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시설의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35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으로 한다.</u> ③ <u>제2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u> 1. <u>소각시설의 경우 : 해당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량 중</u>	<u>제6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u> <u>폐기물처리시설부지(이하 “부지” 라 한다)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 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u> 1. <u>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u> 2. <u>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와 같다</u>

현행	개정안
<u>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u> <u>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2를 적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이하를 절사한다.</u> <u>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u> <u>해당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u> <u>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2를 적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이하를 절사한다.</u> <u>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획 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은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목포시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u>	
제7조(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① 납부금액 중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	제7조(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① -- -----

현 행	개 정 안
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생 략) 2. (생 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비 등 제반 건설비와 책임감리비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법에 따른다. 다만,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설건설 실적이 있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소요비용을 산출하거나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 지침(환경부)」의 표준단가 및 규모 지수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및 견적에 적용하는 시설기준은 별표1부터 별표3까지로 하며, 시설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종량제 봉투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원가계산 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u> <u>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u>
<u><신 설></u>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u>⑥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u>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④ ----- 위촉한다.

현 행	개 정 안
<u>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 1. <u>환경관리과장</u>,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2. · 3. (생 략) ⑤ · ⑥ (생 략) 제20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생 략) ② 기금운용관은 <u>환경관리과장</u>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생 략) <u>제5장 보칙</u>	1. <u>자원순환과장</u>----- 2. · 3.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자원순환과장</u>-----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별표 1] 소각시설 시설기준(1일 200톤 처리규모) - 제7조제3항 관련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																												
시설명	구성장비	시설조건																												
반입 공급설비	쓰레기 계량설비 쓰레기 및 대형쓰레기 투입문 쓰레기 크레인 대형쓰레기 파쇄기 쓰레기 반입자 및 진출입문 쓰레기 피트 전기 계장설비 및 기타	- 쓰레기 피트는 3일 이상 저장용량 - 쓰레기 계량설비 크레인은 2기 이상																												
	소각로 보조버너 침출수 분사설비 쓰레기 공급 이송설비 유압장치 전기 계장설비 및 기타	- 1일 200톤 처리 - 강열감량 7% 이내 - 설계범위 1,700 ~ 3,300kcal/kg - 연소가스 출구온도 850℃이상																												
연소가스 냉각설비	폐열보일러 고압 및 저압증기 복수기 응축수 처리설비 고압증기 분배설비 슈트 브로아 급수펌프, 순수 제조설비 청관제 주입설비 증기터빈 발전기 지역난방수 열교환설비 탈기시설 보충수 공급시설	- 연소가스 배출온도 200℃이하																												
	집진설비 반건식 반응탑 SCR 촉매시설 활성탄 흡착설비	<table><tr><td>오염물질 종 류</td><td>단 위</td><td>일평균 치</td><td>최고치</td></tr><tr><td>분 진</td><td>mg/Sm³</td><td>10</td><td>30</td></tr><tr><td>황산화물</td><td>ppm</td><td>10</td><td>30</td></tr><tr><td>염화수소</td><td>ppm</td><td>10</td><td>30</td></tr><tr><td>질산화물</td><td>ppm</td><td>30</td><td>80</td></tr><tr><td>알데하이드</td><td>ppm</td><td>30</td><td>50</td></tr><tr><td>다이옥신</td><td>ng-TEQ/Sm³</td><td>-</td><td>0.1</td></tr></table> 기타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다		오염물질 종 류	단 위	일평균 치	최고치	분 진	mg/Sm³	10	30	황산화물	ppm	10	30	염화수소	ppm	10	30	질산화물	ppm	30	80	알데하이드	ppm	30	50	다이옥신	ng-TEQ/Sm³	-
오염물질 종 류	단 위	일평균 치	최고치																											
분 진	mg/Sm³	10	30																											
황산화물	ppm	10	30																											
염화수소	ppm	10	30																											
질산화물	ppm	30	80																											
알데하이드	ppm	30	50																											
다이옥신	ng-TEQ/Sm³	-	0.1																											
급배기 설 비	압입송풍기 2차공기 송풍기 유인 송풍기 덕트배관 및 부속 전기 계장설비 및 기타 굴뚝	- 굴뚝높이 120m 이상																												

가. 시설부지 면적		
구 분	소요면적	비 고
폐 기 물 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12평)/톤 1기 기준 400㎡(1,200평)이하
	100~300톤/일	30㎡(9평)/톤 1기 기준 400㎡(1,200평)이하
	300~500톤/일	20㎡(6평)/톤 1기 기준 400㎡(1,200평)이하
	500톤/일 초과	10~15㎡/톤 (3~4.5평) 1기 기준 400㎡(1,200평)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100평)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150평)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	500톤/일 이하	330㎡(100평) -
	500톤/일 초과	500㎡(150평) -
건 폐 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나. 주민편의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 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총부지면적=시설부지면적(가)+주민편의시설면적(나)+주변녹지대 면적(다)

현행			개정안
시설명	구성장비	시설조건	
재처리 설비	재피트 재반출 계량기 재크레인 재이송, 추출, 냉각장치	- 재피트 저장용량 5일분 이상 - 바닥재와 Fly ash 분리저장	
급배수 설비	용수 저장조 및 고가탱크 급수펌프, 보충수 펌프 등 기기 냉각수 순환펌프 등 냉각탑 기타 배관 및 관련 장치	- 관련규정 및 KS규정에 의함	
폐수처리 설비	유기계 폐수처리 시설 무기계 폐수처리 시설	- 배출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준용	
유틸리티	수전설비 상수도 인입 LNG인입 및 정압설비	- 관련법규에 의함	
기타 설비	압축공기 설비 구내 냉난방 설비 청소차량 전자동 세차설비 연료저장 및 공급설비(비상 발전기용) 화재방지 경보설비 등 소방설비		
전기 설비	수배전설비 비상 발전설비 및 비상전원 옥내외 조명설비 제어 전원 낙뢰 보호설비 TV 공시청 설비		
계장설비	분산제어 설비(DCS) 감시용 제어반 및 계기 프린터 폐쇄회로 카메라 및 모니터 기타 부대설비	- Mimic 반을 갖고 있는 감시용 제어용 - 중앙 콘트롤실에서 감시, 분석, 제어 정보 입출력 시스템 - 안전 인터록 장치	
건축설비	공장동 관리동 기타부속건물	- 쓰레기 차다장차림 보이지 않도록 미려한 구조	
토목 조경설비	조경설비 담장		

※ 환경부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세부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

현행	개정안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 시설기준(1일 30톤 처리규모) - 제7조제3항 관련 <table><tr><th>시 설 명</th><th>구 성 장 비</th><th>시 설 조 건</th></tr><tr><td>반입설비</td><td>음식물 쓰레기 저장호퍼 반입창 차량 진출입문 이물 혼입차질 과쇄기 선별기 이송 시스템(컨베이어시설 등)</td><td>- 약취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한다. - 과쇄기는 Hammer mill 또는 Shredder - 선별기는 자력선별기 등 자동시설 - 채질은 내부식성 사용</td></tr><tr><td>발효설비</td><td>발효조 추진조 가스처리 설비 탄수소 폐수 처리설비(혐기성 설비에 한함)</td><td>- 시설수량이 상이할 경우 필요 설비 가감한다.</td></tr><tr><td>후 처 리 설 비</td><td>선별기 이송설비 포장설비</td><td>- 이물질 배출설비 포함</td></tr><tr><td>계장설비</td><td>PLC 또는 DCS 제어방식 중앙제어실 카메라 모니터를 통한 폐쇄회로 기타 부대설비</td><td></td></tr><tr><td>전기설비</td><td>수 배전 설비 온도의 조명설비 난방보온 설비 기타 부대설비</td><td></td></tr><tr><td>건축설비</td><td>공장도 관로도 내 내난방 설비 기타 부대설비</td><td></td></tr><tr><td>토목조경 설 비</td><td>조경설비 담장</td><td></td></tr></table> ※ 환경부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세부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	시 설 명	구 성 장 비	시 설 조 건	반입설비	음식물 쓰레기 저장호퍼 반입창 차량 진출입문 이물 혼입차질 과쇄기 선별기 이송 시스템(컨베이어시설 등)	- 약취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한다. - 과쇄기는 Hammer mill 또는 Shredder - 선별기는 자력선별기 등 자동시설 - 채질은 내부식성 사용	발효설비	발효조 추진조 가스처리 설비 탄수소 폐수 처리설비(혐기성 설비에 한함)	- 시설수량이 상이할 경우 필요 설비 가감한다.	후 처 리 설 비	선별기 이송설비 포장설비	- 이물질 배출설비 포함	계장설비	PLC 또는 DCS 제어방식 중앙제어실 카메라 모니터를 통한 폐쇄회로 기타 부대설비		전기설비	수 배전 설비 온도의 조명설비 난방보온 설비 기타 부대설비		건축설비	공장도 관로도 내 내난방 설비 기타 부대설비		토목조경 설 비	조경설비 담장		[별표 2] <삭 제>
시 설 명	구 성 장 비	시 설 조 건																							
반입설비	음식물 쓰레기 저장호퍼 반입창 차량 진출입문 이물 혼입차질 과쇄기 선별기 이송 시스템(컨베이어시설 등)	- 약취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한다. - 과쇄기는 Hammer mill 또는 Shredder - 선별기는 자력선별기 등 자동시설 - 채질은 내부식성 사용																							
발효설비	발효조 추진조 가스처리 설비 탄수소 폐수 처리설비(혐기성 설비에 한함)	- 시설수량이 상이할 경우 필요 설비 가감한다.																							
후 처 리 설 비	선별기 이송설비 포장설비	- 이물질 배출설비 포함																							
계장설비	PLC 또는 DCS 제어방식 중앙제어실 카메라 모니터를 통한 폐쇄회로 기타 부대설비																								
전기설비	수 배전 설비 온도의 조명설비 난방보온 설비 기타 부대설비																								
건축설비	공장도 관로도 내 내난방 설비 기타 부대설비																								
토목조경 설 비	조경설비 담장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사료화) 시설기준(1일 30톤 처리규모) - 제7조제3항 관련 <table><tr><th>시 설 명</th><th>구 성 장 비</th><th>시 설 조 건</th></tr><tr><td>반입설비</td><td>음식물 쓰레기 저장호퍼 반입창 차량 진출입문 이물 혼입차질 과쇄기 선별기(이물질제거시설) 이송 시스템(컨베이어시설 등)</td><td>- 약취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한다. - 과쇄기는 Hammer mill 또는 Shredder - 선별기는 자력선별기 등 자동시설 - 채질은 내부식성 사용</td></tr><tr><td>발효설비</td><td>건조설비 교반설비 살균시설 발효시설 이송콘베이어</td><td>- 건식과 습식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사양으로 한다.</td></tr><tr><td>후 처 리 설 비</td><td>배출시설 시료공부시설 또는 포장설비 선별기(필요시)</td><td></td></tr><tr><td>계장설비</td><td>PLC 또는 DCS 제어방식 중앙제어실 카메라 모니터를 통한 폐쇄회로 기타 부대설비</td><td></td></tr><tr><td>전기설비</td><td>수 배전 설비 온도의 조명설비 난방보온 설비 기타 부대설비</td><td></td></tr><tr><td>건축설비</td><td>공장도 관로도 내 내난방 설비 기타 부대설비</td><td></td></tr><tr><td>조경설비</td><td>조경설비 담장</td><td></td></tr></table> ※ 환경부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세부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	시 설 명	구 성 장 비	시 설 조 건	반입설비	음식물 쓰레기 저장호퍼 반입창 차량 진출입문 이물 혼입차질 과쇄기 선별기(이물질제거시설) 이송 시스템(컨베이어시설 등)	- 약취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한다. - 과쇄기는 Hammer mill 또는 Shredder - 선별기는 자력선별기 등 자동시설 - 채질은 내부식성 사용	발효설비	건조설비 교반설비 살균시설 발효시설 이송콘베이어	- 건식과 습식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사양으로 한다.	후 처 리 설 비	배출시설 시료공부시설 또는 포장설비 선별기(필요시)		계장설비	PLC 또는 DCS 제어방식 중앙제어실 카메라 모니터를 통한 폐쇄회로 기타 부대설비		전기설비	수 배전 설비 온도의 조명설비 난방보온 설비 기타 부대설비		건축설비	공장도 관로도 내 내난방 설비 기타 부대설비		조경설비	조경설비 담장		[별표 3] <삭 제>
시 설 명	구 성 장 비	시 설 조 건																							
반입설비	음식물 쓰레기 저장호퍼 반입창 차량 진출입문 이물 혼입차질 과쇄기 선별기(이물질제거시설) 이송 시스템(컨베이어시설 등)	- 약취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한다. - 과쇄기는 Hammer mill 또는 Shredder - 선별기는 자력선별기 등 자동시설 - 채질은 내부식성 사용																							
발효설비	건조설비 교반설비 살균시설 발효시설 이송콘베이어	- 건식과 습식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사양으로 한다.																							
후 처 리 설 비	배출시설 시료공부시설 또는 포장설비 선별기(필요시)																								
계장설비	PLC 또는 DCS 제어방식 중앙제어실 카메라 모니터를 통한 폐쇄회로 기타 부대설비																								
전기설비	수 배전 설비 온도의 조명설비 난방보온 설비 기타 부대설비																								
건축설비	공장도 관로도 내 내난방 설비 기타 부대설비																								
조경설비	조경설비 담장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시 정 알 림 판

2018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12세(2005~2006년 출생)여성 청소년
- 지원내용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건강 상담 서비스(6개월 간격으로 2회 제공)
- 대상백신 : 가다실(4가 백신)과 서바릭스(2가 백신)중 선택 가능
- 지원기관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의 사업 참여의료기관 및 보건소
-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참여의료기관 및 접종백신 확인 가능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270-8800

시민 중국어 강좌 수강생 모집(2차)

- 접수기간 : 2018. 4. 30.(월)~5. 18.(금)
- 교육기간 : 2018. 5. 21.(월)~6. 27.(수) [총 15회]
- 교육대상 : 초급 중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목포시민
- 교육일정 : 매주 월·수·금 14:30~16:30
- 교육장소 : 목포벤처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청호시장 옆)
- 교 육 비 : 무 료(교재교육비는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각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및 일자리정책과 방문, 전화 또는 팩스(061-270-8791)



일자리정책과 ☎ 061-270-8457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7인
소득 인정액	72	122	158	194	230	266

(단위 : 만원/월, 2018년 기준)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1원 단위 절상)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행정복지)센터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만 신청
- 주거급여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시 정 알 림 판

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 5. 8.(화)~6. 22.(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일반 장애인(변경) : 제품가격의 20%
-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기존과 동일)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X 50% (㉞)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10만원 (㉞)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X 50%)

- 신청방법 : 온라인(www.at4u.or.kr), 우편(정보통신과), 방문(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필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필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선택),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선택) 등
-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전라남도 정보화담당관 ☎ 061-286-2723
 -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 107

정보통신과 ☎ 061-270-8550

2018년 생활체육광장교실 운영 현황

연번	광장명	위 치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지도자명
1	청소년문화공원	목포시 무안동(YMCA 옆)	생활체조	19:30~20:30	한미란
2	북향노을공원	목포시 산정동 1110-8 (북향해양수산복합센터 뒤편)	"	"	안경희
3	삼학도공원	목포시 삼학로 92번길 98 (어린이바다과학관 옆)	"	"	정수경
4	유달경기장	목포시 용당로 101 유달경기장내	"	"	오수진
5	이로웰빙공원 (철도폐선부지)	목포시 상동 535-6 (용해라이프2차 앞)	"	20:00~21:00	이미옥
6	산정동 생활체육공원	목포시 산정동 산58-10(론볼장)	"	"	임문희
7	등근공원	목포시 옥암동 1021(부흥동주민센터 옆)	"	"	주정림
8	양을산산림욕장	목포시 양을산 테니스장 옆	"	06:00~07:00	김춘심
9	유달산공원	목포시 죽교동 노적봉	국학기공	"	이승미
10	석현근린공원	목포시 영산로 610 대성사랑으로 옆 수변공원	생활체조	"	박현아

교육체육과 ☎ 061-270-3251 목포시체육회 ☎ 061-274-7330